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

주식회사 풀무원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- ①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의거,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증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.

제2조 (역할 및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과 역할에 따라, 이사회역량구성표(Board Skill Matrix, BSM)를 검토하고,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증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 단,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에 75% 이상 출석이 가능해야 하며, 위원회에서 정한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경영진, 재무담당임원 또는 이사회 운영 담당 부서장에게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법규 및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는 사외이사 재임 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,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.
- ③ 위원 1인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 1인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'위원장'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.
 1. 사외이사 중 가장 먼저 위원회에 선임된 이사
 2. 제1호에 해당하는 이사가 복수일 경우 연장자

제 3 장 회 의

제5조 (소집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 유고시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. 그러나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7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.
 1.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및 기준의 수립

2. 이사역량구성표(Board Skill Matrix, BSM)
 3.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의 선정 및 후보의 추천 결의
 4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-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1. 반기 1회 이내 사외이사 후보 Pool 보고
 2.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 요건 및 독립성 요건 검증
- 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9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0조 (위원회 지원조직)

- 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이사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1조 (외부 자문 등)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제12조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(1)

이 규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)

이 규정은 2018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3)

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4)

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